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김민석 (법제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조례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,

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제처장에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법령의 소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법제처장은 법령의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,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법령안 주관기관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

제12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

중 “국무조정실”을 “국무조정실, 기획예산처”로 한다.

5. 법령안 주관기관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

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6(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등의 마련)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. 다만, 입법정책의 통일성, 일관성,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입안의 기준이 법령안 심사에도 적용되도록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받은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) ① ~ ④ (생략)	제11조(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, 의견 조정,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위하여 법령의 소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법제처장은 법령의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
⑥ (생략) 제11조의4(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) ① <u>법령안 주관기관의 장,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적적 이</u>	⑥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4(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) ① <u>법령안 주관기관의 장,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</u>

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의2(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) ① (생략)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

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법령안 주관기관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법령안 주관기관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

③ -----

으로 구성한다.

1. 재정경제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국무조정실,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·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)

2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-----
--- 국무조정실, 기획예산처-----

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6(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등의 마련)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. 다만, 입법정책의 통일성, 일관성,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입안의 기준이 법령안 심

<신 설>

사에도 적용되도록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.
제28조의2(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받은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0 - 6543